

제2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6.14(수) 16:00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전문위원 유지영

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엄재창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5월 31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02일

3. 제안 이유

- 우리도내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운용중인 조례가 상위법령의 변경과 기존 귀농인을 위한 지원에서 이를 확대하여 귀농어 및 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명칭 변경(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→충청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)
- 나. 근거법령 변경 :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→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안 제1조)
- 다. 기존 귀농인이란 표현에서 이를 확대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(안 제2조, 안 제5조)
- 라. 상위법에 따라 귀농어·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과 취소 사유 명기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'은 근거법 이었던 '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'에서 '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'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의 명칭도 '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'에서 '충청북도 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'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와 함께, 기존 귀농인이란 표현에서 이를 확대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
- 또한 귀농어·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과 취소 사유를 명기하는 등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